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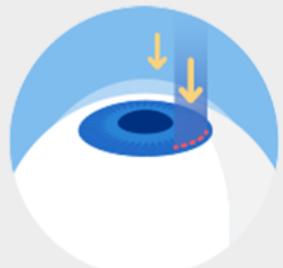
비급여

이젠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하세요!



비급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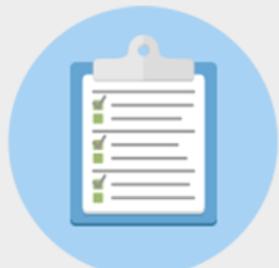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시력교정술(라식)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발급

예를 들면 시력교정술(라식),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등이 비급여입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비급여는 병원마다 명칭 및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이해와 비교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공개대상 항목별 진료비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돋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어떻게 조회 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비급여 진료비 정보

2

모바일 앱 '건강e음'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 또는
환자가 요청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근거: 「의료법」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주요내용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언제 하는 건가요?



치료계획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상황에 따라 진료 후 설명 가능)

문의전화번호 안내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및 비용 공개제도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연락주세요!



보건복지부 X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